

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513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15개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1. 8. 9.

주 문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8월 9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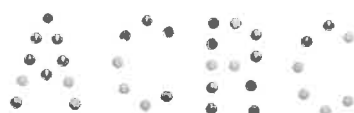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2021. 8.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국정과제 75)
‘예산낭비사업 근절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VIP 강조사항: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 토착비리 등 지방정부 의회가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18.6.18. BH 수석보좌관회의)

□ 추진배경

-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세 일부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지방재정법, 지자체 조례)
 -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
 - ※ 조정교부금(100%)= 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특별한 제한 없음
 - 반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법률 등에서 사용용도 제한
-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15개)^{1)*}에서 226개 시·군·구에 연간 약 1.4조원(20년 기준)을 교부·운용 중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발생
 - 위법·부당한 사업예산 편성·집행, 형식적인 사업검토, 외부 참여 절차 부재 및 교부사업 사후관리 부실 등 문제점 다수 노정
- 이에, 위원회는 그간 외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편성·집행·사후관리 등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21. 1월 ~ 6월 중순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화: ~ 7월 초
- 제도개선 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21. 8월

1) 시·군 조정교부금: 8개 도와 군이 존재하는 4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울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1개 특별시(서울)와 6개 광역시(상기 4개 광역시 + 광주, 대전) <제주, 세종은 모두 제외>



II. 제도현황

□ 조정교부금 제도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에서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지방재정법 제29조, 제29조의2)
- **(기능)** 광역시·도가 지방세 일부 재원을 활용하여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 균형발전 도모
- **(종류)**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90%,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배분

< 연도별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현황 >

(단위: 억원, %)

연도	총 규모 (전체 지자체)	이전재원(A+B) (광역→기초)	시·도비 보조금(A)	조정교부금(B)
2016	2,907,420 (100.0)	234,281 (8.1)	129,748 (4.5)	104,533 (3.6)
2017	3,044,724 (100.0)	254,409 (8.4)	138,711 (4.6)	115,698 (3.8)
2018	3,245,041 (100.0)	267,647 (8.2)	150,526 (4.6)	117,121 (3.6)
2019	3,677,185 (100.0)	304,310 (8.3)	176,099 (4.8)	128,211 (3.5)
2020	4,777,568 (100.0)	397,082 (8.3)	260,033 (5.4)	137,049 (2.9)
연평균 증가율 (2016~2020)	13.2	14.1	18.9	7.0

* 2016년~2020년 최종예산액, 시군구 예산편성 기준

* 시·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임

① 시·군 조정교부금²⁾

- (목적) 광역시·도 내 시·군 간 재정형평성 제고 등
- (근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도 조례
- (운영) 8개 도와 군이 존재하는 4개 광역시(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울산 울주군)

2)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를 모태로 하며 2000년에 시·군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도입된 시·군 재정보전금(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과 시·도세 징수교부금 제도(징수교부율 3%로 일원화되어 현재까지 운영)로 이원화되었다가, 2014. 5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전금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명칭 변경(일반재정보전금→일반조정교부금, 시책추진보전금→특별조정교부금)

- (재원)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및 지방소비세의 27%(인구 50만 이상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47%)
- (배분)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 재정력에 따라 배분

② 자치구 조정교부금³⁾

- (목적) 특별·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자치구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도모
- (근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지방자치법」 제196조, 시 조례
- (운영) 1개 특별시(서울)와 6개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울산)
- (재원) 특별·광역시 보통세*의 일정률**(조례로 정함)
 -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 ** 서울 22.6, 부산 22.0, 대구 22.29, 인천 20.0, 광주 23.9, 대전 23.0, 울산 20.0
- (배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 자치구에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

< 현행 조정교부금 구분 및 내용 >

구분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성격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
근거	▪ 「지방재정법」 제2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재원	▪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 -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47%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 ▪ 광역시·도의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65%는 발전소 소재 시·군에 별도 배분	▪ 특별·광역시 보통세의 일정률로 조례에 규정 - 서울 22.6% - 부산 22.0% - 대구 22.29% - 인천 20.0% - 광주 23.9% - 대전 23.0% - 울산 20.0%
종류	▪ 일반조정교부금 : 90%(일반재원) ▪ 특별조정교부금 : 10%(특정재원)	▪ 좌동

3) 「지방자치법」 개정(1988년)으로 특·광역시의 구(區)가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개편되면서, 특·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용도	▪ 일반조정교부금은 용도 지정없이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사용 ▪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시 부과된 조건이나 목적에 맞게 사용	▪ 작동
배분 기준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 - (일반조정교부금) 인구수 50%, 장수 실적 20%, 재정력 30% ('16.8.29. 개정, '17.1월부터 시행) - (특별조정교부금) 시·도 조례에 위임	▪ 특별·광역시별 조례로 규정 - (일반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과 유사 *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 방식과 유사

□ 특별조정교부금

- (운용규모) 조정교부금은 '19년 13조 7,013억원, '20년 14조 3,738억원이며, 이 중 특별조정교부금은 각각 1조 3,687억원, 1조 4,255억원임

< 시·도별 특별조정교부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시·도명	2019년			2020년		
	조정교부금	일반	특별	조정교부금	일반	특별
합계	13,701,345	12,332,629	1,368,715	14,373,868	12,948,314	1,425,554
서울특별시	3,512,656	3,161,390	351,266	3,706,210	3,335,589	370,621
부산광역시	859,346	774,639	84,707	935,636	843,285	92,351
대구광역시	558,436	502,591	55,845	554,788	499,308	55,480
인천광역시	669,794	602,815	66,979	726,255	653,630	72,625
광주광역시	368,366	331,530	36,836	389,089	350,180	38,909
대전광역시	342,469	308,222	34,247	332,808	299,527	33,281
울산광역시	279,053	251,148	27,905	249,676	224,710	24,966
세종특별자치시	-	-	-	-	-	-
경기도	3,967,289	3,570,561	396,728	4,011,633	3,610,470	401,163
강원도	282,840	253,624	29,215	300,559	270,506	30,053
충청북도	407,639	366,878	40,761	412,381	371,143	41,238
충청남도	432,943	384,741	48,202	569,293	516,458	52,835
전라북도	372,111	334,900	37,211	372,125	334,912	37,213
전라남도	321,073	290,293	30,780	341,772	309,644	32,128
경상북도	563,457	511,720	51,737	530,152	481,610	48,542
경상남도	763,873	687,577	76,296	941,491	847,342	94,149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시·도 교부기준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시·도 제출자료 분석·정리

- **(법적근거)** 시·군 및 자치구의 특정한 재정수요 충당 재원으로서 용도* 명시(지방재정법 제29조의3)

* 지역개발, 재난재해 복구·대응, 공공시설 신설·보수 등 시·군 및 자치구의 각종 현안수요 대응 재원으로 활용

- **(배분재원)**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를 특조금 재원으로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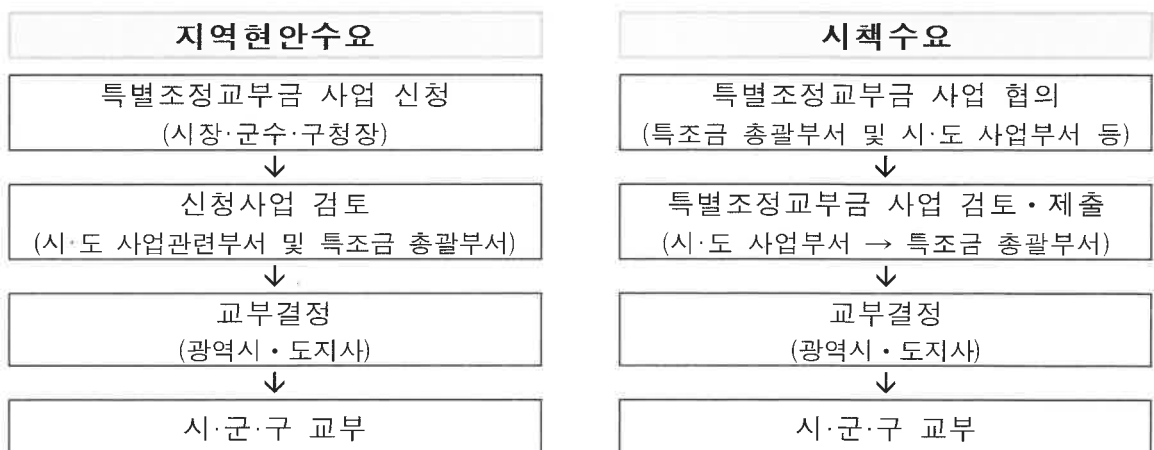
- **(조례위임)** 광역시·도 조례에 교부기준, 배분시기 및 방법 등 규정

- (교부대상) 주민생활 복지·환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책·협력,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등

대상 사업	▶ 시·군·구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지자체가 연관되는 광역 행정 차원의 추진사업 ▶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예비비를 포함한 시·군·구 재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발생한 수요 ▶ 기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 발생 등
교부 유형	▶ (지역현안수요) 지역개발·주민숙원 등 현안사항 관련 재정수요 대응 ▶ (시책수요) 시·도 장려사업, 시·도-시·군·구 간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군·구 지원 등 ▶ (재난안전수요) 재난대응·피해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수요 * 시·도와 시·군·구 협력사업, 공동목적을 위해 광역 시·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사업 및 재난 긴급대응 사업 등은 신청없이 교부 가능

- (교부방법)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하여 배분하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배분 가능

< 지역현안 및 시책수요 교부절차(예시) >



- ※ 1. 상기 유형은 일반적인 형태를 토대로 한 것이며, 시·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중임
 2. 일반적인 교부절차로서 시책수요·재난안전수요도 경우에 따라 사업신청 절차를 거치며, 재난안전수요는 지역현안수요 또는 시책수요에 포함

- (배분시기) 통상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익월에 배분하며 사업신청·교부 등 제반요인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배분기준) 재정여건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다소 상이
 - 지역개발사업이나 광역 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
 - 일반조정교부금과 기준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지자체
 -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교부제한)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과 같은 특정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서 집행목적·용도에 제한 설정
 - 특조금 운용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 지원 등 예산낭비 차단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민간 지원 용도 사용 금지
 -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재원으로 특조금 사용 불가(「지방재정법」 제29조의3)
 - 이외에도 제도성격과 취지에 맞지 않는 타 기관 대행·공공기관 지원사업(출자·출연 포함), 일회성·전시성 사업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 ※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 및 특조금 운용기준에서 교부대상 사업과 제한사업 규정
- (용도변경) 당초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배분조건이나 용도 변경시 광역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집행
- (집행관리) 민간 지원 보조, 교부조건·용도변경 절차 위반 및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사업 미추진 시 교부금 반환 또는 감액

Ⅲ. 실태조사 (특별조정교부금 위법·부당 집행사례)

□ 실태조사 개요

- 대상기관: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 내 90개 시·군·구(전체 226개 중 39.8%)
※ IV. 문제점 관련 운영실태는 15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전수조사
- 대상사업: '18~'19년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이라 함) 사업
※ 법률 및 제도목적·취지에 위반되는 집행사례 중심으로 조사
- 조사기간: '21. 1 ~ 6월
- 조사방법: 서면·실지조사 병행

□ 위법·부당한 편성 및 집행사례

- 특정 개인·단체·법인 대상 민간 보조, 공무원 등 복리후생 목적 사용 및 일회성·전시성 사업 등 총 259억 2,290만원의 부적정 집행사례 확인
- 그간 특조금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지역 특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선 시급
※ 최근 3년간('18~'20) 특조금 관련 지방의회 등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사실상 전무
- 90개 시·군·구의 교부사업 집행내역을 일부 확인한 결과, 법률 위반 및 제도목적·취지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통상 시·도별로 연간 100~900여개의 사업을 교부하고 있고, 사업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특조금 재원으로 편성

*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사업비 1천만 원~5천만 원) 위주로 특조금 사업 편성

- ① 인센티브 교부금*을 직원 포상금(21개 시·군)으로 지급하거나 외유성 성격의 워크숍·국외출장(27개 시·군) 용도로 20억 401만원 집행

* 평가나 대회 등의 결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포상금이 아닌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별도의 사업예산인 경우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권익위 실태조사('21.1~6월)

<충청권역>

- (포상금 지급) 8개 시·군은 '18~'19년에 교부받은 신속집행 인센티브 교부금 5억 8,279만원을 포상금으로 소속 부서 및 직원들에게 부담 지급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집행용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포상금	A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37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75,000
		B	기획감사실 등 43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18,000
		C	정책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68,100
			정책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75,000
		D	재정집행 우수 직원 52명에게 포상금 지급	48,000
		E	재정집행 우수 직원 70명에게 포상금 지급	18,200
		F	재정집행 우수 직원 49명에게 포상금 지급	14,800
		소 계		
2019	포상금	G	기획담당관실 등 51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30,000
		H	기획감사실 등 44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20,000
		I	홍보담당관실 등 70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70,000
		J	정책예산담당관실 등 23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45,000
		K	기획조정실 등 39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70,000
		L	기획감사실 등 35개 부서에 상품권 지급	30,699
		소 계		
합 계				582,799

* 특조금 집행분만 기재 / 시군비 등 매칭사업의 집행액은 매칭비율에 따라 계산(이하 동일)

- (국외출장·워크숍) 2개 군은 상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교부금 1,760만원을 국외출장비로 집행(미집행분 포함시 5,760만원)하였고, 3개 시·군은 5,116만원을 관광지 견학 등 워크숍·연찬회 용도로 부담 집행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집행용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국외출장	A	신속집행 유공 직원 23명 국외연수	15,406
		B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외연수	2,199
		소 계		17,605
	워크숍, 연찬회	C	회계담당자 40명 연찬회	23,400
		D	예산(경리) 담당자 23명 현장 견학	16,790
		E	신속집행 유공 직원 39명 워크숍	10,972
		소 계		51,162
2019	워크숍, 국외출장	F	코로나19로 워크숍 취소(20,000)	-
		G	코로나19로 국외출장 취소(20,000)	-
		소 계		-
합 계				68,767

<전라권역>

- (포상금 지급) 13개 시·군은 '18~'19년에 교부받은 지방세정평가·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관련 인센티브 교부금 중 3억 3,181만원을 소속 직원 및 읍·면에 포상금으로 부담 지급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집행용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포상금	A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 우수 직원 16명 포상금	3,600	
		B	○○면 등 6개 읍·면 포상금 지급	5,000	
		C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직원 3명 포상금 지급	2,060	
			○면 등 7개 읍·면 상품권 지급	5,940	
		D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직원 12명 포상금 지급	5,500	
		E	도시경관과 등 19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15,000	
		F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직원 25명 포상금 지급	15,000	
		G	○○읍·○○면 등 28개 읍·면 포상금 지급(3회)	24,000	
		H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 9개 읍·면 포상금 지급	15,000	
		I	지방세 징수율 제고 우수 읍·면 포상금 지급	23,500	
		J	○○읍 등 11개 읍면 포상금 지급(2회)	15,000	
		K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 12개 읍·면 포상금 지급	20,000	
		L	지방세 징수 유공직원 13명 및 11개 읍·면 포상금 지급	25,000	
		소 계			174,600
2019	포상금	M	지방세 징수율 제고 유공직원 7명 포상금 지급	4,700	
		N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 직원 17명 포상금 지급	9,517	
			○○면 등 7개 읍·면 상품권 지급	5,000	
		O	지방세정 평가 우수 직원 14명 포상금 지급	6,000	
		P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직원 26명 포상금 지급	20,000	
		Q	○○면 등 14개 읍·면 포상금 지급(2회)	45,000	
		R	○○면 등 7개 읍·면 포상금 지급	19,000	
		S	지방세 체납 징수 유공직원 4명 포상금 지급	3,000	
		T	지방세 징수율 제고 유공직원 8명 포상금 지급	2,000	
		U	○○읍 등 11개 읍·면 포상금 지급	22,000	
		V	○○읍 등 12개 읍·면 포상금 지급	10,000	
		W	○○면 등 10개 읍·면 포상금 지급	10,000	
		소 계			156,217
		합 계			330,817

■ (국외출장·워크숍) 18개 시·군은 상기 인센티브 교부금 5억 8,637만원을 국외 출장비 용도로 사용(미집행분 포함시 6억 137만원)하였고, 17개 시·군은 4억 3,525만원(미집행분 포함시 4억 6,025만원)을 워크숍 용도로 부담 집행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집행용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국외출장	A	세수증대 유공직원 19명 국외연수(2회)	75,205
		B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직원 3명 국외연수	15,000
		C	세수증대 유공직원 6명 국외연수(2회)	29,113
		D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직원 2명 국외연수	10,000
		E	지방세 체납징수 유공직원 5명 국외연수(2회)	24,900
		F	지방세 징수율 제고 유공직원 4명 국외연수	20,000
		G	지방세 업무 담당자 24명 국외연수	40,000
		H	세수증대 유공직원 5명 국외연수(2회)	24,400
		I	지방세 징수 유공직원 28명 국외연수	46,671
		J	지방세 징수 유공직원 2명 국외연수	10,000
		K	지방세 징수 유공직원 11명 국외연수	30,000

2019		L	지방세 징수 유공직원 3명 국외연수	14,776	
		M	지방세 업무 담당자 12명 국외연수	50,000	
		N	지방세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직원 2명 국외연수	9,763	
		O	지방세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직원 3명 국외연수	12,500	
		소 계			412,328
	워크숍, 연찬회	P	지방세정 평가 유공 직원 44명 선진지 견학	12,500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 직원 43명 선진지 견학	10,000	
		Q	세정업무 담당자 80명 역량강화 워크숍	24,439	
		R	지방세정 평가 우수 직원 41명 선진지 견학	15,390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직원 44명 선진지 견학(2회)	13,000	
		S	세수증대 및 지방세정 평가 유공직원 40명 선진지 견학	32,100	
		T	지방세 업무 담당자 39명 선진지 견학(2회)	22,000	
		U	지방세 업무 담당자 39명 워크숍	24,970	
		V	지방세 업무 담당자 37명 워크숍	5,600	
		W	지방세 업무 담당자 28명 선진지 견학	5,320	
		X	지방세 업무 담당자 40명 선진지 견학	18,889	
		Y	지방세 업무 담당자 37명 선진지 견학	20,000	
		Z	지방세 업무 담당자 20명 워크숍	20,000	
		AA	지방세 업무 담당자 18명 워크숍	9,768	
		소 계			233,976
	국외출장	BB	지방세 체납 징수 유공직원 3명 국외연수(15,000)	-	
		CC	세수 증대 유공직원 22명 국외연수	20,900	
		DD	선진 지방세제도 연구 관련 2명 국외연수	8,669	
		EE	선진 지방세제도 연구 관련 2명 국외연수	9,790	
		FF	선진 지방세제도 연구 관련 2명 국외연수	9,688	
		GG	지방세 체납 징수 유공직원 35명 국외연수	45,000	
		HH	지방세 체납 징수 유공직원 15명 국외연수	30,000	
			지방세 업무 담당자 15명 해외 산업시찰	50,000	
		소 계			174,047
		워크숍, 연찬회	II	세정부서 근무자 40명 선진지 견학(25,000)	-
			JJ	세수증대 유공직원 72명 선진지 견학	26,177
			KK	지방세 업무 담당자 8명 선진지 견학	2,067
			LL	지방세 체납 징수 유공직원 26명 워크숍	10,400
MM	지방세 업무 담당자 49명 선진지 견학		16,000		
NN	지방세 업무 담당자 31명 선진지 견학		20,000		
OO	세정부서 근무자 27명 선진지 견학		20,900		
PP	지방세·세외수입 담당자 54명 선진지 견학		4,000		
QQ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40명 선진지 견학		5,000		
RR	지방세·세외수입 담당자 42명 선진지 견학		20,000		
SS	지방세·세외수입 담당자 26명 역량강화 워크숍		13,000		
TT	지방세 업무 담당자 20명 워크숍		10,000		
UU	지방세 업무 담당자 20명 워크숍		10,000		
VV	지방세 업무 담당자 35명 워크숍		19,036		
WW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36명 선진지 견학		24,700		
소 계			201,280		
합 계				1,021,631	

② 52개 시·군·구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 등 민간 지원 보조사업 재원으로 195억 1,142만원 집행

아래 사례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특조금을 민간에 지원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은 특조금의 민간지원 보조사업 사용 전면 금지(‘15.1.1.시행)

➡ 지역현안 수요 대응 등 공익목적 사용을 위한 것으로, 특정인(개인·단체·법인)에 대한 특혜부여나 선심성 사업 집행 방지 목적임

또한, 시·군·구는 특조금이 아닌 일반 사업비로 민간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통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특조금 사업은 관련 절차 다수 생략

권익위 실태조사(‘21.1~6월)

<충청권역>

■ (민간보조) 민간 아파트 단지 외벽도색 등 시설 보수, 민간 마을회관(경로당) 신축·보수 및 시립 학교법인 체육관 건립·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 15억 8,345만원 집행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A	○○3리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수신기 포함) 설치	10,000
		□□경로당 리모델링 및 ◇◇마을회관 다용도실 증축	25,000
	B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725
	C	마을회관(○○1리, ■■■2리) 신축	193,012
	D	전통무용단 해외공연 지원, 경로당(△△리, ⊕⊕리) 신축	144,382
	E	마을회관(○○리, □□리, △△리) 신축·보수 및 주차장 포장	333,547
소 계			716,666
2019	F	■■■마을회관 기능보강 공사	13,000
	G	■■■중학교(○○학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125,000
	H	아파트(○○, □□, △△2차)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	198,876
		26개 경로당(마을회관) 창호개선 사업	229,910
	I	◆◆중학교(◆◆학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300,000
소 계			866,786
합 계			1,583,452

<수도권역>

■ (민간보조) 시장상인회 대상 선진시장 견학, 이벤트·홍보 및 시설 공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4억 9,747만원 집행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년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종합시장)	135,000
	B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	157,500
	C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시장)	90,000
	D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시민지하도 상가)	90,000
	소 계		472,500
2019년	E	○○○○○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24,972
	소 계		24,972
합 계			497,472

* 형식적으로는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업단)을 통한 민간단체(시장상인회) 대상 지원사업임

<경상권역>

- (민간보조) 민간 소유 상가 시설 보수·기능보강 공사, 민간 소유 마을회관 (경로당) 증축·보수 등 14억 8,108만원 지원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A	경로당(○○, △△) 증축	89,481
	B	마을회관(□□, ▽▽, ◇◇) 정비	120,000
	C	ⓂⓂ면 ○○마을 벽화 조성	47,022
	D	○○시장 냉난방기 설치	125,134
		□□□□□상가 시설정비(화장실, 승강기 보수 등)	118,974
		♠♠시장 덕트배관 공사 및 경관조명 설치	109,613
	E	◇◇종합시장 환경개선(화장실·지붕 개보수, 옥상방수)	123,606
	F	□□중앙시장 건축물 보수·보강 공사	376,943
소 계			1,110,773
2019	G	◆◆시장 투광등 교체	20,770
		●●시장 판넬지붕 방수공사	67,334
	H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198,463
	I	○○마을 경로당 신축(100,000)	집행 중
	J	경로당·마을회관(♠♠·♠♠, ●●·▨▨) 정비	15,000
		□□면 ▨▨리 ▽▽마을 쉼터설치	18,770
	K	▨▨어항 체험장 저질개선	49,975
소 계			370,312
합 계			1,481,085

<전라권역>

- (민간보조) 민간아파트 공용시설 주거환경 개선, 마을회 소유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마을 공동창고 신축·공동 벼 건조기 설치, 개인·마을회 소유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등 12억 5,010만원 집행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A	○○○○팰레스 1차(아) 쉼터 및 ⓂⓂ주공 2차(아) 공용시설 개보수	45,000
		○○○(아) 체육시설·옥외용 벤치 설치, △△맨션(아) 외벽 및 ▲▲(아) 어린이놀이터 정비	70,000
	B	▨▨(아) 주차장 보수 및 ▨▨(아) 캐노피 설치	69,438
		□□(아) 공동시설 리모델링 및 ▨▨(아) 쉼터 개보수	24,326
		▽▽밸리(아) 어린이놀이터 및 ▨▨(아) 쉼터 정비	49,493
		▨▨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9,900
	C	◇◇면 ▨▨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	30,000
		□□면 ◆◆리 마을 공동 벼 건조기 설치	17,970
		▨▨면 ▨▨리 △△마을회관 개보수	30,000
	D	○○면 ⓂⓂ마을회관 기능보강	9,660
	E	○○마을회관 주방확장·내부 보수 및 ▲▲마을회관 정비	48,433
	F	△△경로당 화장실 신축·마당 포장 및 ▨▨경로당 개보수	47,031
		◇◇읍 주공(아) 경로당 개보수	20,000

	G	㉠㉠면 노인분회 건물 증축	236,181
	소 계		707,432
2019	H	○○(아) 주민센터 및 ㉠㉠㉠㉠(아) 비가림막 설치	45,000
		□□경로당 내부시설 보수	20,000
	I	경로당 기능보강(8개소)	55,000
	J	□□면 ㉠㉠경로당 등 4개소 기능보강	28,030
	K	△△읍 ㉠㉠마을회관 개보수	28,489
	L	▲▲▲경로당 개축	70,000
	M	○○마을회관 주변정비	15,125
	N	□□마을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200,000
	O	◇◇◇◇경로당 개보수	18,970
	P	◆◆◆ 마을회관 리모델링	25,899
	Q	▽▽경로당 등 5개소 기능보강	36,161
	소 계		542,674
합 계		1,250,106	

<수도권역>

- (민간보조) 특조금을 사립학교 법인 소유 재산(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기타 교육 시설·설비 및 교재·교부 등)에 146억 9,930만원 집행
- * 특히, 시·군·구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A	○○중학교(○○학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450,000
		□□고등학교(□□학원) 천문관측시설 구축	433,000
	B	○○중학교(○○학당) 인조잔디 설치	358,000
		□□□□고등학교(□□학원) 실내도장 등	371,000
		㉠㉠중학교(㉠㉠학원) 교실출입문 교체 등	35,000
		○○고등학교(○○학원) 방음벽 설치	20,000
		○○○○고등학교(○○학원) 실습실 환경개선	20,000
		♀♀여고(♀♀학원) 교실커튼 교체 및 4차산업미래형 교실구축	120,000
		♂♂고등학교(♂♂학원) 소강당 마루바닥 보수	15,000
	C	㉠㉠중학교(㉠㉠학원) 체육관 방송시설 교체	87,000
	D	◆◆고등학교(◆◆학원) 냉난방기 교체	100,000
		▽▽고등학교(▽▽학원) 노후철판, 교단 등 교실환경 개선	100,000
	E	◇◇◇◇고등학교(◇◇학원) 소방펌프교체 및 배관보수	16,900
		▽▽▽▽학교(▽▽▽대학교) 교실 TV 교체, 무선인터넷 구축	28,496
		●●중학교(●●학원) 교실 빔 프로젝트 교체	34,880
		■■■학교(■■■재단) 교실 내·외부 외부 시공	30,000
	F	■■중학교(■■학원) 교실 냉난방기 교체, 교실천정 및 LED 교체	1,355,000

		고등학교(학원) 교실천정 석면텍스 및 LED 교체	150,000
		고등학교(학원) 운동장 개선 공사	774,000
	G	고(학원) 농구코트 및 풋살구장 정비 등	50,000
	H	여중(학원) 과학실 리모델링	50,000
	I	고등학교(학원) 운동부 휴게시설 개선	274,000
	J	학교(학원) 구조안전 및 설계비 지원	39,000
		고등학교(학원) 시청각실 개선	211,726
		고등학교(학원) 원형극장 시설 보수	200,000
	K	△△△△△고등학교(△△학원) 항공실습실 설치	100,000
		고등학교(학원) 가사실 환경개선	134,422
	L	고등학교(학원) 우레탄 트랙 교체	50,000
	M	△△중학교(△△학원) 보도 포장, 음수대·보일러·배관 교체	132,000
		중학교(학원) 교실 미닫이문 수리	11,000
	소 계		5,750,424
2019	N	고등학교(학원) 실내 농구장 시설 개선 등	220,000
	O	고등학교(학원) 교실 노후 영상장치 교체	100,000
		고등학교(학원)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100,000
		고등학교(학당) 쓰레기 분리수거장 신축, 기념관 화장실 개선	120,000
	P	여자고등학교(학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279,000
		중학교(학원) 정보검색실 무선 AP구축 공사 등	30,000
	Q	중·고등학교(학원) 스마트 교실 구축	231,000
		중·고등학교(학원) 운동장 트랙 교체, 교실환경 개선	188,000
		고등학교(학원) 도서관 개선 및 장애인 승강기 설치	240,000
		여자고등학교(학원) 강당 냉난방설비 구축	136,000
		고등학교(학원) 도서관 보수 및 운동장 잔디공사	100,000
	R	학교(학원) 전통서터 및 뽕스설치, 조경보수 등	50,000
	S	예고(학원) 정문 전동문 교체	50,000
		고등학교(학원) 애니메이션 제작 실습 기자재 구입	42,000
		중 학교(학원) 사물함·교탁 교체, 노트북 구매	55,000
	T	고등학교(학교) 학생식당 주변 차양막 설치	176,882
	U	고(학원) 교실 냉난방 개선, 도서관 책걸상 교체	1,051,000
		중학교(학원) 체육관 조성(급식동 2개층 증축)	320,000
		고등학교(학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530,000
		여자고등학교(학원) 학습카페 조성	40,000
		△△고·여고(△△학원) 방송선로 개선, 급식실 노후 오븐 교체	110,000
		여자고등학교(학원) 소강당 노후시설 개선	178,000
	V	외고(학원) 스터디카페 조성	450,000
	W	△△여중·고(△△학원) 책걸상 교체, 수업용 스마트TV 설치	151,000
		부속중학교(대학교) 체육관 및 학생식당 건립 용역	100,000
		중학교(학원) 교실 석면텍스 제거	160,000
	X	여자고등학교(학원) 체육관 석면교체	374,000

		○○고등학교(○○학원) 인조잔디 개보수	600,000
Y		□□초등학교(□□학원) 교실 칠판 및 수납장 교체	45,000
Z		◎◎중·고(◎◎학원) 방송선로 교체, 급식실·학생식당 증축	130,000
		□□□고등학교(□□학원) 원형극장 구조물 보강	382,000
		㉡㉡여자중학교(㉡㉡학원) 책걸상·교실 마이크 교체 등	200,000
		◎◎고등학교(◎◎학원) 본관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	350,000
AA		○○고등학교(○○학원) 급식실 전면 개보수	250,000
BB		㉡㉡고등학교(㉡㉡학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360,000
CC		㉡㉡중학교(㉡㉡학원) 사물함 및 청소도구함 교체	50,000
DD		●●●부속초교(●●●학원) 교실천정 석면제거 및 조도 개선	150,000
EE		㉡㉡여자고등학교(㉡㉡학원) 화장실 개선	450,000
FF		◎◎고등학교(㉡㉡학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400,000
소 계			8,948,882
합 계			14,699,306

③ 중요도·시급성이 낮거나 낭비적 요소가 다분한 일회성·전시성 사업과 지방공기업 출연금 지급 등으로 8억 8,661만원 집행

권익위 실태조사('21.1~6월)

- 시급성이 낮고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지역 특산물 조형물 제작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 집행, 지방출연 기관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지급 및 직원 개인용 패딩 구입에 인센티브 지급금 사용 등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충청권>			
2018	A	○○산 등산로 먼지떨이기 설치	14,414
2019	B	◇◇◇◇관광재단에 출연금 지급	400,000
2019	C	지역 특산물 홍보 관련 드라마 제작 지원	100,000
		지역 특산물 조형물 제작	162,000
소 계			676,414
<전라권>			
2018	A	독립영화 제작지원	100,000
2019	B	□□·○○ 홍보 조형물 설치	100,000
2019	C	부서 직원 겨울용 패딩 구입	9,200
2019	D	지방세 성실납세자(개인·법인) 시상금 지급	1,000
소 계			210,200
합 계			886,614

④ 지역현안·재난재해 사업 등과 거리가 먼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급량(간식)비 등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하여 34억 5,439만원 집행

권익위 실태조사('21.1~6월)

<수도권역>

-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출·퇴근용 (개인용) 방한복과 간식비(온누리 상품권 포함) 지급 *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 ※ 방한복은 1벌당 35~45만원 단가 구입 / 간식비는 1인당 약 45만원 상당 지급(1년 기준)

(구분: 교부연도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시군구	지출 내역	집행액	
2018	A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131명)	58,950	
		간식비(온누리상품권 등) 지급(131명)	45,850	
	B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112명)	38,135	
		간식비 지급(112명)	51,080	
	C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71명)	24,630	
		간식비 지급(71명)	30,450	
	(중간 생략)			
	D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25명)	8,750	
		간식비 지급(25명)	10,950	
	E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110명)	37,950	
		간식비 지급(110명)	49,500	
	F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74명)	25,900	
		간식비 지급(74명)	33,300	
	소 계			1,969,559
2019	A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116명)	41,760	
		간식비 지급(116명)	25,610	
	B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96명)	34,560	
		간식비 지급(96명)	21,600	
	C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120명)	43,200	
		간식비 지급(120명)	27,000	
	(중간 생략)			
	D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83명)	29,880	
		간식비 지급(83명)	18,675	
	E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171명)	13,680	
		간식비 지급(171명)	86,355	
	F	출퇴근용 방한복 구입(67명)	24,120	
		간식비 지급(67명)	15,075	
	소 계			1,484,833
합 계			3,454,392	

⑤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보조(공모)사업을 특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 단체의 자부담분 부담 감면

권익위 실태조사('21.2~6월)

<경상권역>

-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함)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대상(개인·상인회·법인)의 자부담분(사업비의 5%) 면제

사례 특조금을 활용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

'18~'19년 특조금 교부사업 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관내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가림시설(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공사 내역 확인 결과,

3개 시·군에서 13억 2,931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시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등에 따라 통상 국가 60%, 지자체 30% 및 민간 10%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시에는 민간에서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나 특조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 보조사업 문제 외에도 민간 자부담 비용을 면제하고 있어 시정 필요

- * 전통시장 등에 설치하는 아케이드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인 중앙통로를 점유하게 되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도로점용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자체 명의로 진행하면서 도로점용료 등 관련 비용 면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신 시장(경제살리기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협의 확인

1. 경제살리기과-와 관련하여,

2. 상기 호로 요청한 가설건축물축조 협의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 【가설건축물】 및 제29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특별】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 협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설건축물 축조 조건 건축법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지관리행사가 바랍니다.

다

가. 건축물 위치 :
나. 건축주 주소 :
성명 : 시장
다. 가설건축물신고번호 : 2021-건축허가과-
라. 협의내용 (단위 : 평, 톤)

현도	구조	층수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준제기간	시정지구	비고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	불물조	주1	지상1	619.83	619.83	2023.11.16.	안반성읍지역, 완곡읍지역, 양곡지구, 서기리경관지구, 양곡시범마을지구(영미)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 신고조건

<도로점용 허가>

수신 시장(경제살리기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10년)허가 통보

건축허가과-)로 신청하신 도로점용(10년)허가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 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토한 바 격할하며 불입의 조건으로 도로점용(10년)허가를 통보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 시 준공확인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 도로점용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2021.4.23. ~ 2030.12.31.
피허가자	주 소	
점용목적	수산시장 아케이드	점용료 (부가세 미포함) 면제
점용장소		
점용면적	702㎡	허가조건 허가조건 참고

붙임 : 허가증 및 허가조건 각 1부, 끝.

IV. 문제점

1 사업 신청 전 사전검증 장치 미흡

- 지원제한·금지 사업에 대한 신청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 시·군·구 사업신청 과정에서 특조금 지원 제한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물량·단가 적정성 여부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미흡
 - * 민간지원 보조사업, 특정 문중·종교·단체 지원사업, 지방의회 삭감·유보사업 등
 -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 특히, 특조금을 운용하는 15개 시·도 중 10곳(66.7%)은 시·군·구 신청 사업의 적격성 등을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미운영
 - 나머지 5곳(33.3%)도 일부 항목(합법성, 시급성 등 사업적격성 및 집행계획 수립 여부)은 사전 검증기준에 미반영

※ 【참고1】 사전 점검표 운영 현황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 \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군구) 신청사업 사전 점검표	○	-	○	○	-	-	-	○	-	○	-	-	-	-	-
점검표 필수 제출여부 (시군구→시도)	○	-	○	○	-	-	-	○	-	○	-	-	-	-	-

- 일부 시·도는 특조금 신청사업 계획서에 대한 시·군·구 예산부서의 검토의견 제출과 시·도 유관부서 의견조회 미실시
 - 7개 시·도(46.7%)는 신청사업에 대한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결과를 제출받지 않음
 - 10개 시·도(66.7%)는 시·도 유관부서에 신청사업에 대한 의견조회 생략

※ 【참고2】 신청사업 검토 운영현황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 \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예산부서 검토의견서 제출(시군구→시도)	-	○	○	○	○	○	-	○	-	○	-	-	-	-	○
신청사업에 대한 시·도 유관부서 의견조회	-	-	-	○	○	-	○	-	-	-	-	-	○	-	○
(지침 규정)	-	-	-	○	○	-	-	-	-	-	-	-	-	-	○

※ 【참고3】 사업검토 미흡 사례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① 지원제한 여부 미확인(민간자본보조)

■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

- (추진배경) ○○ 여성 자율방범대 출범을 위한 여성 대원 맞춤형 시설 리모델링(탈의실·화장실 확장, 수도·방수공사, 출입문 설치 등) 목적으로 2,500만원(특조금 1,250만원) 교부('19.9.2.)
- (사업내용) <사업변경> 사무실 이전으로 노후 물품 교체 및 사무실 내부 공사(전기·간판·불박이장 공사, 에어컨 설치 등)로 변경('20.11.)
- (문제점) 해당 사업은 민간 소유 시설에 대해 전기공사와 사무실 집기(소파, 복합기, 옷장, 냉장고 등)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법률에서 금지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용도로 편성

➡ '19년 제3회 추경 편성시 특조금을 민간보조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2천 5백만원 전액을 군비로 편성 후 집행('20.12.)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기용액	비교증감
402 민간자본지원	270,200	245,380	25,000
402 민간자본지원(자립지원)	97,180	97,180	0
402 민간자본지원(자립지원)	173,120	148,199	25,000
402 민간자본지원(자립지원)	76,000	51,000	25,000
402 민간자본지원(자립지원)	25,000,000	25,000	25,000

사례② 사업효과성 사전검토 미흡

■ ○○○상점가 로고젝터 및 미디어보드 설치 공사

- (추진배경) 고객 편의 제공과 쇼핑 환경 개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고젝터(LED조명을 이용하여 바닥에 이미지 투영·프로그램 홍보) 및 미디어보드(홍보사항 시각적 안내) 설치 비용 1억 5천만원 교부('19.12.30.)
- (사업내용) <사업변경> CCTV설치 및 노후 전광판 보수로 변경('20.11.1.)
- (문제점) 당해 사업은 시장상인회 건의로 도의원이 제안하여 사업화가 진행되었는데,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미디어보드의 화면크기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전광판(LED 소자로 화면크기가 상대적으로 큼)에 비해 작아 시인성과 홍보 효과가 낮다는 시장상인회 추가 의견제기에 따라 사업 변경 진행

➡ 최초 사업비 교부 이후 용도변경까지 11개월 간 사업이 중단되었고, '21.6월 기준, 전광판과 CCTV 설치 관련 설계용역 완료 상태임

사례③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토지보상·협의 미이행)

■ ○○○ 가는길 급커브 정비사업

- (추진배경) ○○○ 가는길 급커브로 인해 차량 시야 확보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상존
- (사업내용) 급커브 및 비탈면 정비(L=0.15km) 사업비 4억원 교부('18.11.28.)
- (문제점) 당초 사업 계획상 '18.11월에 사업 착수하여 '19.3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협의 대상자가 대상토지(답, 569㎡)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예상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였고, 사업부서에서 보상협의 대상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재감정에 따른 평가액 기준으로 보상협의 가능여부를 검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여 사업 중단

➡ 사업 취소 및 반납 처리('20.4.30.)

사례④ 사실관계 사전검토 미흡(도시계획시설 현황 확인 누락)

■ ○○○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

- (추진배경) ○○○초등학교 진입로에 인도(길이 40m, 폭 2m)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6천만원(특조금·시비 각 50%) 편성('18년)
- (사업내용)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인도 정비
- (문제점) 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도 정비 구역에 담장과 가로수가 다수 위치해 있어 지장물 이전·보상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유지가 포함 되어 있어 협의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② 인도와 인접한 도로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 불가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별도 사업비 6억 6천만원(특조금 3천만원 포함)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2차선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2m) 개설 완료]

- 특조금 사업 심사·선정, 운영방향·기준 심의 등 제도운동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 등 외부 참여절차 부재
 - 15개 시·도는 사업 선정시 특조금 운영부서 내부검토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나, 민간 전문가 참여 규정 미비
 - ※ 경기도는 일부 정책공모 사업 선정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사업 심의('20년 교부금 기준 9.6%)
 - 매년 특조금 운영계획 수립 시 외부 의견 수렴·반영 절차가 없어 투명한 제도운동 저해
 - ※ 15개 시·도(100%)는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을 별도 공개하고 있지 않음
 - ※ 2개 시·도(전라남도, 경상북도)는 특조금 운용기준이 없는 상태로 제도운동 중이며, 전라북도는 16년 이후 운용기준 미정비
 - ※ **【참고1】 특조금 지침 부실 사례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2020년 ○○○도 특조금 운용계획

- ▶ 지침에서 법률상 민간 지원이 금지되는 특정사업에 대해 허용

배분(선정) 기준

<공통기준>

- 시·군 요청사업과 도의 종합적 개발계획 연계 사전 검토
- 시·군에서 '시설비'로 편성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지원 불가(법 §29조의3)
 - 단, 전통시장, 문화재 보수정비 등 시설비로 사업 추진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수혜가 가는 지역개발사업 지원

2021년 ○○○도 특조금 운영계획

- ▶ 특조금 지원제한 기준 미흡

<지원기준>

- 특정 개인, 단체, 종교, 문종 등 민간보조사업 지원불가
-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사전절차 이행완료 등)

⇒ **이외에 타 시·도 지침에 규정된 교부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음(예시)**

-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민간위탁·타 기관 대행사업,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이거나, 해당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
- 교육 지원사업, 교육청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 일회성 행사, 전시성·선심성 사업 및 지방의회 삭감·유보 사업 등

○ 교부사업 대다수가 지역개발·주민숙원 등 지역현안 사항이며, 사업화 과정에 선출직 공무원(단체장·지방의원 등) 의견 일부 반영

- 지역현안 수요 반영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폐쇄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선정 및 예산낭비 소지
- 지자체 집행기관(단체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 간 내부통제 원리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 부실운영 우려

※ 특조금 교부사업에 대해 지자체 사업부서 실무자들은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사업비”로 지칭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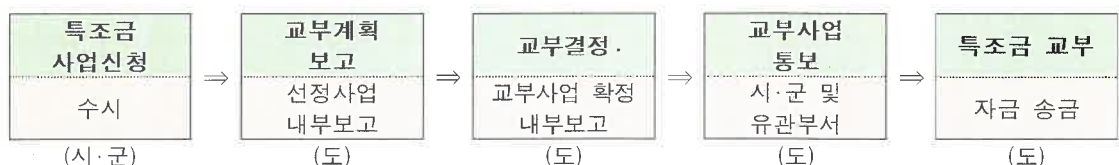
※ **【참고2】 요식절차에 따른 교부사업 선정 의혹 사례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도의 '19~'20년 기간 중 1차~3차 교부사업 확인 결과, 회차별 교부사업 결정보고 당일 접수된 신청사업(총 35개, 온나라 전자문서) 모두 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교부결정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도지사에게 교부사업을 확정·보고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요식절차로 공문 시행한 결과임

구분	1차		2차		3차	
	마감일신청	당일선정	마감일신청	당일선정	마감일신청	당일선정
2019년	1개 사업	좌동	-	-	3개 사업	좌동
2020년	2개 사업	좌동	1개 사업	좌동	28개 사업	좌동

※ 사업선정·교부절차: 사업신청(시·군) → 교부계획 보고(도, 선정사업 내부보고) → 교부결정(도, 교부사업 확정) → 교부사업 시·군 및 유관부서 통보(도) → 자금배분(도)



■ 2019년 교부계획 도지사 내부보고 자료 중 일부

(단위: 백만원)

시·군	건의 내용	지원계획			검토내용
		사업비	건의액	검토액	
A	□□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여성 샤워실, 탈의실 설치, 60㎡)	25	12.5	12.5	♫ 여성자율방범대 출범으로 여성 탈의실 등 필요(도지사 지시) ⇒법률에서 금지하는 민간 보조 재원으로 편성
B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5개 아파트 시설개선: ○○, △△ 2차, ◇◇마을, ●●마을, ○○)	400	200	200	♫ 영세, 서민 아파트 옥상방수 및 페인트 등 시설개선 필요(지방의회 △△△△△위원장) ⇒법률에서 금지하는 민간 보조 재원으로 편성
C	▽▽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면적 6,836㎡)	820	125	125	♫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C시장)

					⇒법률에서 금지하는 민간 보조 재원으로 편성
D	☞☞중 개방형 다목적강당 건립(1층 규모, 640㎡)	1,248	300	300	△ 학생 생활체육 및 주민 여가공간 활용 도모(D군수) ⇒법률에서 금지하는 민간 보조 재원으로 편성
E	◆◆홍보를 위한 드라마 ■■■ 제작 지원	200	100	100	△ ◆◆과 관광지 이미지 제고 효과 (E군수) ⇒시금성이 낮고, 사업 효과성이 불 투명한 지역특산물 홍보 편성
F	소음피해 경로당 창호개선 사업	460	230	230	△ 공군부대 인근 23개 경로당 소음 피해시설 개선 필요(도지사 약속) ⇒법률에서 금지하는 민간 보조 재원으로 편성
... (이하 생략) ...					

※ 【참고3】 단체장·지방의원 건의사업 신청사례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도 관내 시·군에서 '20년 2~3월 기간 중 교부 신청한 사업목록에
건의자별(시장·군수, 도의원) 사업명과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음

(사례) 2020년 특조금 교부 관련 시·군 신청목록 자료 中 일부

(단위: 백만원)

시·군	건의자 (시장·군수, 도의원)	사업명	사업량	신청		
				계	도비 (특조금)	시·군비 등
A	A시장	○○테니스장 이전 설치 공사	테니스장 이전 조성 10면, 주차장 및 부대시설 1식	5,000	2,000	3,000
B	B군수	○○면 상습 가뭄지역 양수장 설치사업	양수장1개소(Q=3.8ton/min, 송수관로(D300m/m)L=2.60km	1,600	600	1,000
C	C시장	◇◇둔치(□□동~ △△동) 친수공간 조성사업	자전거도로및보행로L=8.6km , 친수공간조성	7,300	600	6,700
D	도의원	㉠㉠㉠시장 아케이드 시설물 개선공사	환기설치 5EA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포장지 재포장(A=840㎡)	45	45	-
D	도의원	㉠㉠㉠㉠상가 화장실 보수	화장실 일부 보수(위생도기 교체, 내부칸막이 교체 등) 공사 1식	20	20	-
E	도의원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100	100	-
E	도의원	㉠㉠2통 경로당 개보수	옥상방수, 노면포장, 창고보수 등	21	21	-
F	도의원	㉠㉠시장 방수 앰프 시설 교체 정비사업	앰프 시설 교체 정비	50	50	-
F	도의원	◇◇읍 ▽▽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콘크리트확포장L=300m B=2.5m→3.0m	30	30	-
(이하 생략)						

3 교부사업 사후 점검 및 관리 부실

- 최근 3년간 226개 시·군·구에 교부된 특조금은 4조 553억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은 2조 7,667억원(68.2%)에 달함
- 대부분 시설비 성격의 사업 특성상 착수부터 집행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교부 이후 집행관리 매우 중요
- 그러나 교부사업에 대한 집행관리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아 재정관리 효율성과 사업수행자(시·군·구)에 대한 책임 확보 저하

< 최근 3년간 특조금 집행 및 이월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액(A+B)	당해연도 집행액(A)	다음연도 이월액(B)
2018년	소계 (비율)	1,261,105 (100)	385,734 (30.6)	875,371 (69.4)
2019년	소계 (비율)	1,368,715 (100)	454,895 (33.2)	913,820 (66.8)
2020년	합계 (비율)	1,425,554 (100)	447,951 (31.4)	977,603 (68.6)
총 합계 (비율, %)		4,055,374 (100)	1,288,580 (31.8)	2,766,794 (68.2)

※ 226개 시·군·구 집행결과 취합·정리

- 교부사업 추진현황(집행완료·집행 중·미추진), 사업조건 이행과 용도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집행관리 부실
- 시·도 차원에서 교부사업 집행현황을 별도 관리하는 곳은 6곳 (40.0%)에 불과하며, 이 경우도 일부 항목에 국한하여 관리 중

※ 【참고1】 시·도 집행관리 현황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 \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관리대장 서식 유무	-	-	-	-	-	-	-	-	-	-	○	-	-	-	-
사업 집행현황	-	-	-	-	-	-	-	-	-	-	○	-	-	-	-
용도변경	-	-	-	-	-	-	-	-	-	-	-	-	-	-	-
관리대장 유무	-	-	○	-	-	○	○	-	○	○	-	-	-	-	○
사업 상세정보 (사업내용·위치·기간)	-	-	-	-	-	-	-	-	-	-	-	-	-	-	-
사업 집행현황 (집행율, 미추진 사유 포함)	-	-	○	-	-	○	-	-	○	-	-	-	-	-	○
용도변경	-	-	○	-	-	○	○	-	-	○	-	-	-	-	-
변경승인 정보 (사업명·승인일자·승인액)	-	-	○	-	-	○	○	-	-	○	-	-	-	-	-

- 민간보조나 목적 외 사용 및 임의 용도변경 등 위법·부당 사례 방지를 위한 집행점검 미흡

※ 최근 3년간 15개 시·도의 사업집행 점검실적 확인 결과, 연간 평균 점검 횟수는 1.5회에 불과하고, 점검 미 실시 기관도 '18년 6개, '19년~'20년 각각 5개에 이릅니다

※ 최근 2년간('18~'19년) 15개 시·도의 교부사업에 대한 반납·감액조치 확인 결과, 총 4건(8억 5,400만원)에 불과

※ **【참고1】 위법·부당 집행사례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① 사전보고·승인 없이 사업대상 임의변경 및 제한용도 집행

□□군 사회복지실(노인복지팀)은 2018년에 도(道) 예산부서로부터 ■■2리 경로당 신축용도로 특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소유권 이견으로 토지 확보가 곤란해지자 도(道) 예산부서 사전승인 없이 ◇◇1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임의 변경하여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용도가 금지된 민간 보조사업 재원으로 집행하였으나 반납·감액 등 조치 없음

* 특조금 운영사항은 도(道) 예산담당관 소관사무이며, 배분조건이나 용도 변경 시 사전에 도 예산담당관 승인을 받아야 함

사례② 특정단체 특혜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 임의변경

2018년에 ○○○도 ○○○군 △△리 마을회관 앞 주차장 포장 명목으로 교부받은 특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민간 부지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사전에 도(道) 용도변경 등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 새마을회 소유 농산물 보관 창고 앞 진출입 도로를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하여 특혜 제공

○ 또한, 집행잔액 관련 재투자 사업 검토 및 반납처리 등 교부 이후 재정사업 관리 공백 발생

- 집행잔액 재투자 현황을 별도 관리하는 시·도는 3곳(23.1%)에 불과

※ 15개 시·도 중 집행잔액 재투자는 10곳, 반납은 4곳, 일반 세입재원 활용은 3곳에서 시행 중(광주는 반납+재투자, 울산은 반납+일반세입 자원활용 혼용)

※ **【참고2】 집행잔액 재투자 관리 현황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 \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재투자 관리대장 서식 유무	-	-	-	-	-	-	-	-	-	-	-	-	-	-	-
재투자 사업 현황 (승인여부, 사업내용, 집행률)	-	-	-	-	-	-	-	-	-	-	-	-	-	-	-
재투자 관리대장 유무	-	-	○	-	-	○	-	-	-	-	-	-	-	-	○
재투자 사업 현황 (승인여부, 사업내용, 집행률)	-	-	-	-	-	○	-	-	-	-	-	-	-	-	-

※ 회색 음영표시 기관은 집행잔액 재투자 제도 미운영

- 사업완료·중단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미반납 상태로 방치하거나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 부실

※ **【참고3】 집행 잔액 반납 및 재투자 현황('21.2~6월 권익위 실태조사)**

반납 ○○○도가 '18~'19년 기간 동안 관내 시·군 대상으로 교부한 특조금 사업 중 완료·추진중단 사업의 집행잔액은 각각 1,828,851천원, 950,463천원이며 시·군에서 해당 집행잔액 전액 미반납('21.3월 기준)

반납+재투자 ○○○도는 '18년 특조금 교부사업 중 완료·추진중단 사업의 집행잔액 3,372,259천원 중 1,001,586천원을 미반납하였고, 재투자 제도를 도입한 '19년 교부사업 중 완료·추진중단 사업의 집행잔액 1,792,014천원 가운데 1,418,617천원 재투자, 33,248천원 반납 후 남은 340,149천원은 미반납('21.3월 기준)

재투자 ○○○광역시가 '18~'19년 기간 동안 관내 군·구 대상으로 교부한 특조금 사업 집행잔액은 각각 3,153,739천원, 2,669,252천원이고, 이를 재투자한 금액은 각각 1,834,538천원과 413,837천원이며, 나머지 1,319,201천원과 2,255,415천원은 군·구 자체적으로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시에 사용승인 신청 중에 있음('21.3월 기준)

사례 교부사업 집행 완료일로부터 상당기간 집행 잔액 방치

○○○○도 특조금 지원사업 정산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2019년 교부사업 가운데 재투자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42개 완료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집행잔액 반납과 재투자 승인신청 및 도(道) 승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반납과 재투자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17개 사업이며, 위 사업의 최종 집행일로부터 '21.4.30. 현재까지 평균 경과일은 265.1.일에 달함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재투자 승인시 특조금 총괄부서장 전결 승인 등 형식적 사업 검토로 부적정한 집행사례 양산

※ 집행잔액 재투자 제도를 운영 중인 10개 시·도 중 9곳이 과장 전결로 재투자 승인 결재(온나라 기준)

※ **【참고4】 집행 잔액 재투자 부적정 사례 【'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재해대응 예산 집행잔액을 재해와 무관한 사업에 재투자

○○○광역시 ◇구청 3개 사업부서는 수돗물 오염 발생으로 관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피해주민 등을 대상으로 급식 및 생활용수 지원을 위한 생수 구입 등 목적으로 '19년 6월 2회에 걸쳐 특조금 13억원을 긴급히 지원받았으나 7월까지 총 1억 8,734만원을 집행(집행률 14.4%)하는데 그쳤고, 가급적 재난재해 대응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집행잔액 11억 1,265만원을 같은 해 11월 ○○○광역시 □□담당관실로부터 재사용 승인을 거쳐 ○○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공사비에 전액 사용

4

상이한 감액·반환기준으로 제재의 형평성 및 일관성 저해

- 특조금 사업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 미흡
 -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주요 제재사유를 반영해야 하나 다수 기준 누락
 - 시·도별로 조례에 제재사유(반환 또는 감액 등)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기준 상이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 용도변경 위반 등 주요 제재사유 반영여부 편차가 발생하여 제재의 형평성 및 일관성 결여
 - 지역에 따라 민간지원 보조사업 재원 사용 등 법률 금지사항을 주요 제재사유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발생
- ※ 충북·전북·전남은 조례에 특조금의 민간지원 보조사업 용도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도 감액·반환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경기도는 제재사유에 포함

< 특조금 감액 또는 반환 사유(시·도 조례) >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재사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받으려 한 때	○	△	○	○	○	-	△	○	○	○	○	○	○	○	○
민간지원 보조사업 목적 사용	-	-	-	-	-	-	-	○	-	-	-	-	-	-	-
시·도지사 승인 거치지 않고 교부조건·용도 변경	○	△	△	○	-	-	△	○	○	○	○	○	○	○	○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미추진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지는 모두 미반영)	-	-	△	○	-	-	-	○	○	○	○	○	○	○	○
정당한 사유없이 교부일로부터 ○년 이내에 사업비 미집행	-	-	-	-	-	-	-	-	-	-	-	-	-	-	-

- * 대구는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는데, 자치구 조례에는 일부 사유(거짓·부정)만 규정
- * 부산(기장군), 울산(울주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만 제정
- * 인천은 자치구·군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

- 또한, '민간 지원 보조', '거짓·부정한 방법' 사유를 조례에 필요적 감액 또는 반납사유로 규정한 시·도 전무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특조금 처리방식은 당해연도 세입계상, 익년도 세입계상 또는 당해연도 간주처리 등 기준 상이[참고1]
- 행정안전부(舊 행정자치부)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일부 제시한 바 있고, 특조금도 해당기준 적용[참고2]

※ 【참고1】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특조금 처리방식

-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세입조치, 순세계잉여금 처리 후 익년도 추경 편성·심의 및 집행
- **익년도 교부 간주 및 성립 전 사용**: 익년도 세입조치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선집행하고, 사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심의 절차 진행(선집행→ 추경편성→ 의회심의)
- **당해연도 간주처리**: 최종 추경예산 예산총칙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사후 의회 보고(의회 사전승인(의결)→ 선집행→ 사후보고)
⇒ 대부분 당해연도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하고, 간주처리 예산 성립 이후 교부금은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 【참고2】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454호('05.4.21.) 공문내용

- **(문제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이 지자체별로 당해연도 세입계상, 익년도 세입계상 또는 당해연도 간주처리 등으로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 저해
- **(처리기준)**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 권한사항이며, 간주처리 예산은 이월 가능
 -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보고
 ⇒ 원칙적으로 최종 추경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규정을 명시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간주처리는 지방의회 결정사항이므로 탄력적 운영

- 그러나 여전히 최종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조금 처리에 있어 시·도 및 시·군·구별 편차 발생
- 간주처리 없는 시·군·구는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없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일부는 '익년도 교부 간주 및 성립 전 사용*' 방식 운용
- *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성립 전 예산집행(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 ㉡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

※ 【참고3】 특조금 당해연도 집행 및 이월현황('21.1~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조사대상: 226개 시·군·구

: '20년 기준, 시·군·구에 교부한 특조금 1조 4,255억원 중 9,776억원(68.6%)을 다음해로 이월하였고, 534억원(3.7%)을 성립 전 사용

- 특조금을 교부받은 226개 기초지자체 중 41개(18.1%) 시·군·구에서 활용

(단위: 천원)

구분	교부액 (A+B)	당해연도 집행액(A)	다음연도 이월액(B)	① 이월금*	② 순세계잉여금**	③ 다음연도 성립 전 사용***
총액 (비율)	1,425,553,431 (100%)	447,950,381 (31.4%)	977,603,050 (68.6%)	797,536,307 (55.9%)	126,651,508 (8.9%)	53,415,235 (3.7%)
서울	370,620,989	152,995,995	217,624,994	215,014,436	2,610,558	-
부산	92,351,000	41,248,011	51,102,989	48,497,462	2,605,527	-
대구	55,479,873	18,657,196	36,822,677	24,872,677	10,200,000	1,750,000
인천	72,625,518	26,004,356	46,621,162	28,511,357	11,259,562	6,850,243
광주	38,909,000	13,873,143	25,035,857	11,872,626	6,083,773	7,079,458
대전	33,280,754	12,004,258	21,276,496	2,287,592	5,191,650	13,797,254
울산	24,966,000	13,307,888	11,658,112	10,875,924	32,188	750,000
경기	401,163,000	50,194,500	350,968,500	283,033,903	52,658,597	15,276,000
강원	30,053,000	15,407,537	14,645,463	14,030,463	615,000	-
충북	41,238,084	18,786,566	22,451,518	13,846,194	5,857,044	2,748,280
충남	52,835,000	16,963,673	35,871,327	29,239,661	6,631,666	-
전북	37,212,468	9,982,142	27,230,326	23,987,937	3,007,389	235,000
전남	32,128,000	13,089,293	19,038,707	12,034,557	4,199,150	2,805,000
경북	48,542,000	11,986,093	36,555,907	33,818,155	2,307,752	430,000
경남	94,148,745	33,449,730	60,699,015	45,613,363	13,391,652	1,694,000

* 예산편성(간주예산 포함) 이후 명시·사고이월 포함 집행잔액 중 이월 금액

** 마지막 추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 중 당해연도 세입초치 후 다음연도 추경에 편성한 금액

*** 교부받은 특조금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 세입처리하고 다음연도 추경편성 이전 집행한 금액

○ 특히, 성립 전 사용은 법령 위반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한 침해 소지

- '성립 전 사용'은 지방의회 의결(승인) 없이 예산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제도로서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 당해연도 교부금을 의회 동의없이 다음연도 교부재원으로 간주하여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받는 것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권한 침해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총계주의*(「지방재정법」 제7조, 제34조) 및 성립 전 사용(동법 제45조) 규정 위반 소지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회계연도 독립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예산총계주의)

6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 대부분의 시·도는 홈페이지(재정공시)에 특조금 교부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개하거나 공개내용 부실
 -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12개 시·도(80.0%) 역시 일부 사항(시·군·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교부액)만 공개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 발생
 - ※ 3개 시·도(울산·강원·경북)는 특조금 교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사업명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사업정보(사업위치·기간·물량·목적물,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필요

※ 【참고】 지방자치단체 결산공시 작성서식 중 특조금 관련 부분

 ○○광역시·도 특조금 교부현황('○○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2,500
○○구	2018-01-02	△△△사업	1,000
**시	2018-01-03	○○○사업	1,500
△△시			
00군			
◇◇군			

〈시·도 홈페이지 공개 예시〉

(단위: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서울 노원구	2019-06-10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500
서울 서대문구	2019-05-07	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	983
서울 광진구	2019-09-10	문화시설 환경정비	394
서울 영등포구	2019-12-24	학교 교육환경 개선	390
충남 서산시	2019-10-13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200
경남 거제시	2019-07-29	마을환경 개선	70
경남 양산시	2020-11-03	명품 보행자도로 조성사업	200
경남 통영시	2019-12-3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60
인천 동구	2020-03-13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사업	500
인천 동구	2020-12-28	청소년 특성화공간 조성사업	483
인천 부평구	2020-03-13	횡단보도 조도 개선사업	200
(…이하 생략…)			

-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의4,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정보공개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 미약

* 행정안전부 공문(재정협력과-1710('19.6.24.)호,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 재정공시 안내」)

IV. 개선방안

1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검증 절차 강화

- 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물량·단가 적정성 여부 등 중요사항 검토를 위한 사전 점검기준(체크리스트) 운영
 - 시·군·구(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사전 검증사항 점검표와 함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시·군·구는 사업 신청 전 사업 타당성을 자체 검증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 강화

· 시·군·구(사업부서)	사업신청서, 사전 검증사항 점검표 작성
· 시·군·구(예산부서)	사업신청서(사전 점검표 포함)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신청

➡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사전 검증사항 점검표 서식 반영

<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 >

시·도	특조금 지침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개요
부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요령
대구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지침
인천광역시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기준
광주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대전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기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

<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사항 점검표(예시) >

구분	검토 내용	해당	비해당
1. 사업주체 관련 (비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1-1.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종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1-2. 국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1-3.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시·군 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 국도비, 특교세, 특조금 등의 재원확보를 전제로 시·군 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은 신청 가능		
	1-4.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지?		
2. 사전 행정절차 (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2-1. 투자심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2-2. 토지보상 완료 등 사업 착공준비가 완료되었는지?		
	2-3. 토목·건축 관련 20억 이상 신규 사업의 경우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2-4. 자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		
3. 사업 적격성 (비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3-1. (합법성)	▪ 사업 목적과 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지? ▪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한지? ▪ 추진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3-2. (타당성)	▪ 사업배경과 추진방향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지?	
	3-3. (시급성)	▪ 해당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이유가 불명확한지?	
	3-4. (유사성)	▪ 기존에 동일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사례가 있는지? ※ 사업 내용과 수혜집단이 동일한 경우	
	3-5. (중복성)	▪ 동일사업을 최근 ○년 이내에 교부한 사례가 있는지?	
	3-6.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고, 사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 낮지는 않은지?	
4 세부 집행계획 수립 (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4-1. 사업 세부항목·통계목별 산출내역을 작성하였는지?		
	4-2. 자원 조달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신청사업에 대한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시·도 유관부서 의견조치 실시

- 예산부서 검토결과를 사업계획서, 사전 검증사항 점검표와 함께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전문사항 등 필요시 신청사업에 대해 유관부서 의견조치 경로
 - ※ 다만, 재난·재해 대응, 긴급현안 등 신속한 교부·집행이 필요하거나 시·군·구 고유사업인 경우 등은 의견조치 생략 가능

➡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반영

2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

○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구성·운영

- 위원회 신설로 특조금 운용기준 검토, 광역·기초 지자체 협력사업 심의 등 특조금 제도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특별교부세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도운영 방향·기준 심의, 시책수요 선정 및 감액금액 심의·결정 등 기능 수행(「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위원회 기능(심의·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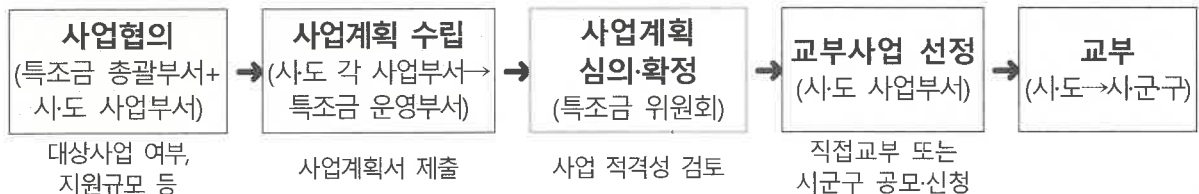
▪ 특조금 제도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특조금 교부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시·도에서 발굴·교부하는 시책사업* 심의

* 시·도 장려사업, 광역행정상 필요사업 및 정책사업 평가(인센티브) 등

<재난재해 대응·복구 관련 사업은 제외, 긴급한 사안의 경우 선 교부·사후 보고>



▪ 특조금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조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체적인 운영방법·기준은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규정하고, 2개 시·도(전남·경북)는 운용기준 신규 제정

○ 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사업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심의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 구성 비율 및 자격기준 명시

※ (구성비율) 심의위원회 위원 중 내부 공무원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 구성 비율 하한선 설정

※ (자격요건) 변호사·회계사·건축사·대학교수·연구기관 종사자 등 지방재정·지역 개발·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예시: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 >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조(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되, 조정교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

현 행	개선안(예시)
	<u>교수 이상의 대학교수</u>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명 3. 그 밖에 지방행정·지방재정· 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 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 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 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현 행	개선안(예시)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② <u>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u> ③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④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 ⑤ <u>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현 행	개선안(예시)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 특조금 총괄부서는 연도별 교부사업 이행실적 점검* 및 기록 관리
(교부사업 집행관리 대장 서식 신설)

- 시·군·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집행현황을 시·도에서
교부사업 세부정보 위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시 점검체계 구축

* 필요시 감사부서, 시·도 사업부서와 협업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집행실적 점검 및 관리(예시)

- (시·도) 교부사업 집행현황 총괄 관리 및 점검(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특조금 총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부사업 집행현황을 현행화하고, 필요시
관내 시군구 관리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
- (시·군·구) 교부받은 사업에 대하여 자원관리책임자(예산부서장)와 사업 관리
책임자(사업주관 부서장) 지정·관리
 - (자원관리책임자) 교부통지 받으면 '특조금 접수 및 집행대장'에 기록 관리
 - (사업관리책임자) '추진사업 관리카드' 기록 관리

➡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관련 서식 반영

< 교부사업 집행관리 대장(예시) >

* 교부기관 통합관리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구성(시·도 상황에 따라 수정 적용)

【○○시·도명】

(단위 : 천원)

교부 회차	교부 일자	교부기관 (시군구)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소관 부서
						계	국고	도비	특조금	특교세	시군 구비	기타	

집행현황			세부 집행현황				
추진완료	추진 중	미추진 (사유 기재)	예산 편성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집행률(%)	지연사유

특조금 관리사항									
지출일자	집행액								
	합계	국고	도비	특조금					특교세
				소계	년	년	년	년	

특조금 관리사항									
집행잔액									
합계	국고	도비	특조금					특교세	시군구비
			소계	년	년	년	년		

용도변경					반납액(특조금)				
승인일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승인액(특조금)	반납액	반납일자	반납사유	

* 국고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 집행잔액 재투자·사업비 반납 현황 상시 점검·관리 및 재투자 사업 심사 강화(재투자 사업 관리대장 서식 신설)

- 집행잔액 상세 관리를 통해 사업비 장기 미반납이나 부적정한 재투자 사업 집행사례 방지

➡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관련 서식 반영

< 집행잔액 재투자 관리대장(예시) >

* 교부기관 통합관리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구성(시·도 상황에 따라 수정 적용)

【○○시·도명】

(단위 : 천원)

교부 회차	교부 일자	교부기관 (시군구)	사업명	교부액 (특조금)	집행잔액(특조금)			집행잔액 재투자(특조금)			
					잔액 총계	발생 사유	재투자 승인액	승인 대상	시·도 승인여부		승인 일자
									예/아니오	승인 문서번호	

집행잔액 재투자						반납액(특조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기간	소관부서	지출일자	반납액	반납일자	반납사유

- 필요시 재투자 사업 소관 시·도 사업부서 의견조회 실시 및 재투자 사업 승인단계 상향(ex. 부서장→기조실장)

➡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반영

○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특조금 반환 및 감액기준 구체화

- 민간 지원 보조,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 정당한 사유없는 사업 미추진 및 용도변경 절차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감액 또는 반납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조금을 교부받거나 받으려 한 때
- 민간지원 보조사업 목적 사용
- 시·도지사 승인 거치지 않고 교부조건·용도 변경
- 예산 미확보·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업 추진 불가
- 정당한 사유없이 특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년 이내에 사업비 미집행

➡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에 별도 규정

※ 조례가 분리 또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조례에 모두 반영하거나 제정

< 예시: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 >

현 행	개선안(예시)
제○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조제○항을 위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

5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최종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에 규정
 - 법령 위반과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성립 전 사용 방식 지양
 - ➡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처리기준 반영
 - ※ 특조금 운용기준 미수립 시·도(전남, 경북)는 운용기준 수립 후 반영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특조금 처리방식(예시) >

- ▶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처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 시·도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미리 교부결정하고 교부한 경우 시·군·구는 교부금을 당해연도 세입조치 및 성립 전 사용 금지
- 지방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주처리하는 시·군·구는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간주처리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등 규정에 따라 이월 가능
- 간주예산 편성 이후 교부금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처리
 - * 당해연도 세입조치 + 다음연도 추경 편성
-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군·구는 순세계잉여금 처리

- 교부사업명과 교부액 등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 강화
 - 구체적인 사업내용(사업대상·위치, 사업항목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
- ➡ 공개항목은 조례에, 공개서식은 시·도 특조금 운용기준(지침)에 반영
- ※ 재정공시(결산)와는 별개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

< 교부사업 정보공개 전·후 비교 >

항목	내용	현행	개선
시·군·구명	△△시·군·구	○	○
교부일자	○○○○. ○○. ○○	○	○
사업명	ex)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	○
교부액	○○,○○○○천원	○	○
사업내용	구체적인 사업정보 (사업대상·위치, 사업항목, 사업기간)	-	○

□ 공개자료(예시)

(단위: 천원)

시군구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사업내용
총계				
소계				
○○구	2019.11.1.	△△△사업	100,000	▪ 사업대상 및 위치 - 실내 배드민턴장: 000구 00동 98-1 - 공원 배드민턴장: 00동 597-204번지(00공원) ▪ 사업항목 - 실내 배드민턴장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 공원 배드민턴장 내 CCTV 설치 ▪ 사업기간: 2020.3.~2020.8.
○○구		○○○사업		
소계				
△△시				
△△시				

- 「지방재정법」에 특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법적근거 및 시·도 조례에 정보공개 범위 명시

< 예시: 지방재정법 >

현 행	개선안(예시)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u>일반 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u>일반 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 예시: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 >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시·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u>시·군·구명</u> 2. <u>교부일자</u> 3. <u>사업명 및 사업내용</u> 4. <u>교부액</u> 5. <u>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15개 광역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①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검증 절차 강화	- 신청사업 사전 점검기준 운영 ※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 기준(지침)'에 서식 반영	15개 시·도	'22.2.
	- 신청사업에 대해 시·군·구 예산 부서 검토 및 시·도 유관부서 의견조회 실시 ※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 기준(지침)'에 절차 규정	15개 시·도	'22.2.
②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 교부금 위원회' 신설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 ※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	15개 시·도	'22.8.
	- 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외부위원 구성 비율·자격기준 - 이해충돌방지규정 등 ※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	15개 시·도	'22.8.
③ 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 시·도에서 교부사업 집행현황 통합관리 - 교부사업 집행 관리대장 서식 신설 ※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 기준(지침)'에 서식 반영	15개 시·도	'22.2.
	집행잔액 재투자·반납현황 점검 관리 및 재투자 사업 심사 강화	10개 시·도 (재투자 제도 미운영 5개 시·도 제외)	'22.2.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 집행잔액 재투자 관리대장 서식 신설 - 재투자 사업 소관부서 의견조회 실시 및 승인단계 상향 ※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 기준(지침)'에 반영		
④ 반환·감액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 특조금 반환·감액기준 정비 - 조례에 주요 감액 및 반납사유 명시 ※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	15개 시·도	'22.8.
⑤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다음연도 성립 전 사용 금지 등 구체적인 처리기준 규정 ※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 기준(지침)'에 반영	15개 시·도	'22.2.
⑥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근거 명확화	▪ 교부사업 정보공개 확대 - 사업내용(사업대상·위치, 사업 항목, 사업기간 등) 추가 공개 ※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	15개 시·도	'22.8.
	▪ 법률에 정보공개 근거 명시 ※ 「지방재정법」에 반영	행정안전부	'22.12.
	▪ 시·도 조례에 정보공개 범위 명시 ※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	15개 시·도	'22.8.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 5. 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④ 삭제 <2016. 8. 29.>

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정 본 입 니 다 .

2021. 8. 10.

국 민 권 익 위 원

